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9



제1584호 2009. 10. 30.

**규 칙**

제590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	2
제591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지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80
제59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	89
제593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9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	--	--	--	--	--	--	--	--	--	--	--	--	--	--	--	--	--	--	--	--



## 규 칙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 개정 (안 제9조)
- 나. 시험응시관련 학력제한 금지 규정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학력제한 규정 폐지(안 제10조)
- 다. 시험수당 신설 (안 제14조)
- 라. 자격증 가점 신설 (안 제39조)
- 마.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 삭제 (별표2의2)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랑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

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승진임용(5급에의 승진임용을 제외한다)
2. 근속승진·우대승진 및 전보 사전 의결
3. 명예퇴직·공무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4.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5. 개방형직위에의 임용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 제2장 시험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과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수수료)**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

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 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은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1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그 밖에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

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의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3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3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3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3의3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

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별표 6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6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 신 학 교 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기능직 기능6급·기능7급
전 문 대 학 졸 업 자	7급·8급·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
고 등 학 교 졸 업 자	9급·기능직 기능9급 이하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8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8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분야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조무·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9과 같다.

### 제3장 임용

#### 제1절 신규임용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 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제2절 6급 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

**제27조(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지방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시보공무원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담당관·과 및 동)로 하고, 수습부서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제28조(수습요령)** 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에 대한 일정별 수습계획 및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9조(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따라 월말 마다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1. 구분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가. 평정자 - 수습지도관이 지정하는 담당팀장

나. 확인자 - 수습지도관

2. 동

가. 평정자 - 행정민원팀장

나. 확인자 - 수습지도관

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작한다.

### 제3절 전보임용

**제30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분청은 담당관·과별로, 구의회사무국·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은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② 구의회사무국장, 담당관, 과장 및 동장은 배치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한다.

**제31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 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5의 특별임용계급상당 경력기준표를 준용한다.

### 제4절 승진임용

**제32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년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2월, 하반기에는 8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시험은 별표 10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기능직공무원 시험승진은 객관식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따르되, 객관식 필기시험은 별표 1의 특별임용 시험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실기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4조(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상위계급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자격증의 난이도를 참작하여 우대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업무와 관련한 기능경시대회에서 전국단위 3위 이내 또는 서울특별시 단

위 1위에 입상한 기능직 공무원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5. 조건부승진 신청자 중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제3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횡수별 또는 인사위원회 심의 횡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횡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7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8조(승급)** 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따라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및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절 평정

제39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13과 같다.

② 평정규칙 별표 5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14와 같다.

제40조(성과포인트제 운영) ① 구청장은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일반직·기능직·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성과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성과포인트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성과포인트 부여기준·부여방법 등 성과포인트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제1호가목 “비고” 간호직렬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능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 및 특별임용 시험과목(제5조 관련)

직렬	시험구분	공개경쟁임용		특별임용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토 목		물리, 국어(한문포함), 측량, 국사, 응용역학, 토목설계		국사	측량, 응용역학 중 1과목
건 축		물리, 국어(한문포함), 건축구조, 국사, 건축계획	구조역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중 1과목	국사	건축구조, 건축계획 중 1과목
통 신		물리, 국어(한문포함), 국사, 유선공학개론, 전기통신법규		국사	전기통신, 유선학개론 중 1과목
전 기		물리, 국어(한문포함), 전력, 국사, 전기통신, 전기기계		국사	전기통신, 전력 중 1과목
기 계		물리, 국어(한문포함), 기계재료, 국사, 기계공학일반		국사	기계공학법, 기계설비 중 1과목
선 박		물리, 국어(한문포함), 국사, 선박기관		국사	선박기관
운 전		국어(한문포함), 국사, 도로교통법		국사, 도로교통법	
교 환		물리, 국어(한문포함), 국사, 전기이론, 통신관계법규		국사	전기이론, 통신관계법규 중 1과목
농 립		생물, 국어(한문포함), 국사, 조림, 임업경영		국사	조림, 임업경영 중 1과목
사 육		생물, 국어(한문포함), 국사, 축산, 가축영양사료		국사	축산, 가축영양사료 중 1과목
위 생		생물, 국어(한문포함), 국사, 공중보건, 환경위생		국사	공중보건, 환경위생 중 1과목
사 무		국사, 사회		국사, 사회	
조 무		국사, 사회		국사, 사회	
방 호		국사, 사회		국사, 사회	

[별표 2]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	승진 시험	비 고
1	채직증명서 1부		○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한함
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그 사본 1통	○		해당자에 한함
3	주민등록초본 1통	○		병역사항 포함(대상자에 한함)
4	복무확인서 1통	○		현역군인에 한함
5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6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 지원대상자증명서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 보호대상자에 한하고,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8	시험요구서 1부		○	



[별표 3]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2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운수			산업기사(열차조작),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전산	전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3급 정사서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소방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공 업	기계운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선	기사(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일반전기	기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자	기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열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금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공 업	섬 유	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99.3.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 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 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 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관리, 산업 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 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 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 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 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 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화훼장식,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3.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 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 관리, 산림, 유기농업, 생물 공학)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 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기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 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농 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 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장(산림) 기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 공학, 임산가공)

직렬 \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녹지	조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수의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 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향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향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향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향해	기술사(조선) 1·2급 향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향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향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건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 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 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 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 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 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 관리,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 관리, 포장, 식품)

직렬 \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 동 위 원 소 취 급 자 (일반), 의무기록사, 임상 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 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 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 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 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 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 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 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 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 방지)	기능장(산림)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 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 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 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 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 예보)	기능장(산림)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 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 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 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 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직렬 \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 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 통신)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 통신, 방송통신)
시설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 계획, 조경, 지질 및 지반,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 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응용지질, 지적,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 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계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 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 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 및 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 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 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 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통 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기사(전자, 전파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파전자)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기사(전자, 전파전자, 전파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파전자)
	전송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기사(전자, 전파전자, 전파통신, 정보통신, 무선설비)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파전자)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기사(전자, 전파전자, 전파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파전자)

비고 :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계급		기능 6·7급	기능 8급 이하
직렬	직류		
토목	토목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보선, 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 사진, 건축제도, 조경, 지적)
건축	건축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조적,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 설비)	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 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플라스틱 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통신	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화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 처리)
전화상담	전화상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전기	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 철도)
기계	기계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 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 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 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 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 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 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영사, 인쇄, 승강기)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 수리, 자동차점검,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 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 운전, 천장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 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 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 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레도 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시계수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 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설비, 평판 인쇄, 스크린인쇄, 전자조판, 사진제판, 승강기)
	영사	산업기사(영사)	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축소사진, 사진제 판)
열관리	열관리	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	기능사(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운전	운전		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계급		기능 6·7급	기능 8급 이하
직렬	직류		
화공	화공	산업기사(공업화학, 화학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가스	가스	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기능사(가스,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선박항해	선박항해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급 항해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선박기관정비)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농림	영림 원예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정,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정)
보건	보건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위생	위생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식품, 폐기물처리)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기능사(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북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오물처리사 2급
사무	워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 3급
	필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계리	주산1급, 부기1급	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
	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전산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비고 : 1. 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 중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 위 표 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 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3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7조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 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스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스 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세스 3급	0.5%

비 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  
로 본다.

[별표 3의3]

##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7조 관련)

### 1. 행정·보건·의무직군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2급,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가산 비율	5%	3%	5%	3%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삭제

###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8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3의4]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 관련)

### 가. 6급 이하 및 기능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법 무 사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기업행정		물류관리사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상하수도, 수질관리	
	농업기계		
공업연구	기 계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촌지도	농업기계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일반기계	<p>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공업배관, 건축배관설비,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농업기계		
공업연구	기계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 업	기계운전	<p>기술사 : 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p> <p>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조 선	<p>기술사 : 조선</p> <p>기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상하수도, 수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공업연구	전 기		
공 업	전 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상하수도, 수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공업연구	전 자		
공 업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공 업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	
공업연구	야 금		
공업연구	금 속	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표면처리, 열처리,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훈자격법」 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섬 유	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업연구	섬 유		
공 업	일반화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상하수도, 수질관리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공업연구	화 공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공 업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	
공업연구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업연구	작 물		
농촌지도	농 업		
농업연구	원 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 업	잠 업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	잠업곤충		
농촌지도	잠 업		
농 업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벼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 업	농 화 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벼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농업연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2급, 영양사, 위생사
생활지도	생 활		
농업연구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업경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청소년지도사1급, 평생교육사2급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 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 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지연구	임 업 조 경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농촌지도	임 업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녹 지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 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기능사 : 조경, 산림	
농 업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농업연구	축 산	기사 : 축산, 식품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 : 축산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기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능사 : 축산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해양수산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	
	수산자원	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경제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해양수산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수 산 물 검 사	기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해양수산 연 구	수산가공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해양수산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해양수산	어 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수산 연 구	수산공학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질환경, 어병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 : 어로	
해양수산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공업연구	물 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열관리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 사, 한약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특 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연구	공중보건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 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 보조기기사
보건연구	의 학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약사, 한의사, 한 약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 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 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 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 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위생사
환경연구	환 경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환 경	수 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대 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폐 기 물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시 설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건축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일반토목 수도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토 목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시 설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운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건축사
시설연구	건축		
시 설	측 지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통 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4]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제18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서비스계의 기술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 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구분표

1) 일반직공무원

임용예정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2)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계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사(2년) 산업기사(4년)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기능사

나. 임용예정직렬(직류)별 자격증의 종류

- 1)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및 별표 2의 직렬(직류)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를 비교하여 상호 관련 있는 자격증으로 하되,
- 2) 임용예정직의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자격증이어야 한다.

다. 기타요건

-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특별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 이상
  - 3급 : 8년 이상
  - 4급 : 4년 이상

-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6)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2.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 계급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직렬 \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운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 관리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 관리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 관리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7)	사회복지사1급 (3)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전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원자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업	축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의	수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 (7)	수산질병관리사 (3)	수산질병관리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통신사(4)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1급 통신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3)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2급 통신사(2)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직렬 \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건	보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무	치과의사(2)				
약무	약무	약사(7)	약사(3)	약사		
	약제	한약사(7)	한약사(3)	한약사		
간호	간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3)	수의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수의사(7)	약사(3)	약사		
		대 기	약사(7)	위생사(8)	위생사(5)		
		폐 기 물	위생사(12)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 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 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 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 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건축사				

비고 : 제1호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위 표에도 적용한다.

[별표 5]

특별임용계급상당경력기준 (제18조 관련)

직무분야		임용예정 계급		2급·지도관	3급·지도관	4급·지도관	5급·지도관	6급·기능 6급이상·지도관	7급·기능 7급·지도사	8급·기능 8급	9급·기능 9급이하
경찰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지방소방정감	소방감지 방소방감	소방정지 방소방정	소방령지 방소방령	소방령 소방위 지방소방령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포함)교원		교수 (3년 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초·중· 고등학교 원 및 기타교육 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11 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12중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12중 전문대학원봉 급액란적용대 상자				19호봉 이상	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판사·검사				4호봉 이상	6호봉 이상	9호봉 이상					
기능직공무원								기능6급 이상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이하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 10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 경력자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6년	3년		

비고 :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같은 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 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라 민간단체장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 이어야 한다.

[별표 6]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8조 관련)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 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모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해양
	일반수산	
환 경	전 직 류	환경(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화학공학, 농화학), 도시계획,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 천문, 기상, 지질, 생물, 생명 과학, 해양
녹 지	전 직 류	임업
시 설	교통시설	토목, 도시행정, 교통공학
	도시교통설계	
	도시계획	도시계획, 토목(토목건설), 건축(건축공학), 조경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 축	건축(건축설비)
축 지	토목(토목건설), 지적(지적정보)	
통 신	통 신 사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별표 7]

특별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8조항 관련)

계      급	2급	3급	4급
연 구 경 력	10년	8년	4년

비 고 :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 후 연구경력임.

[별표 8]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9조 관련)

직렬 \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9]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22조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 업 연 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농 업 기 계
	전 기		기 계 운 전
			일 반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금 속
	섬 유		섬 유
	화 공		일 반 화 공
화 학			
물 리	-		
농 업 연 구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화 학
	작 물 보 호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식 물 검 역
	농 업 환 경	농 업	농 업
		농 촌 지 도	일 반 농 업
	농 업 경 영	농 업	농 화 학
		농 촌 지 도	농 업
	잠 업 곤 충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잠 업
	원 예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화 학
			농 업
			원 예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 업 연 구	생 명 유 전	농 업	일 반 농 업	
			농 화 학	
	농 촌 생 활	농 촌 지 도	일 반 농 업	
			농 촌 사 회	
			생 활 지 도	
	축 산	농 촌 지 도	축 산	
			축 산	
	농 공	농 촌 지 도	농 업 기 계	
			농 업 토 목	
			농 업 기 계	
농 업 토 목				
녹 지 연 구	임 조 업 경 의	녹 지 지 도	전 직 류	
수 의 연 구	수 의 의	수 의 의	수 의 의	
해양수산연구	해 양 환 경	환 경 수 산	수 질 산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자 원	해 양 수 산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양 식	해 양 수 산	해 양 수 산	수 산 중 식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공 학	해 양 수 산	해 양 수 산	어 로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가 공	해 양 수 산	해 양 수 산	수 산 제 조
어 촌 지 도			수 산 물 검 사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경 제	해 양 수 산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보 건 연 구	의 학	의 무	일 반 의 무	
			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약 무
약 무			약 무	
공 중 보 건	보 건 위 생	보 건 위 생	보 건 위 생	
			보 건 위 생	보 건 위 생
환 경 연 구	환 경	환 경	전 직 류	
시 설 연 구	토 목 축	시 설	일 반 토 목	
			농 업 토 목	
	축		축	

2. 지도직공무원

지 직	도 직	직 류	기 직	술 직	직 류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연 구	농 업	일 반 농 업		
			작 물			
			작 물 보 호			
			농 업 환 경			
			농 업 경 영			
	농 업 경 영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임 업	농 업 연 구	농 업 연 구	전 직 류		
			임 업 연 구	임 업 경		
	잠 업	농 업 연 구	농 업	잠 업		
			농 업 연 구	잠 업 곤 충		
	원 예	농 업 연 구	원 예			
	축 산	농 업 연 구	농 업	축 산		
			농 업 연 구	축 산		
	가 축 위 생	수 의 연 구	수 의	수 의		
			수 의 연 구	수 의		
	농 촌 사 회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농 업 기 계	농 업 연 구	공 업	농 업 기 계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업 토 목	시 설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업 연 구	농 공		
	생 활 지 도	생 활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어 촌 지 도	어 촌	해 양 수 산	해 양 수 산 연 구	일 반 수 산	
					수 산 제 조	
수 산 중 식						
어 로						
수 산 물 검 사						
		전 직 류				

### 공무원 승진시험과목(6급이하에의 승진)(제33조 관련)

직급별 직렬별	6급에의 승진		7·8급에의 승진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행정직	헌법 행정법	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 개론 중 1 과목	행정법	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 개론 중 1과목
보건직	생물학개론 공중보건학	전염병관리학, 보건행정학중 1 과목	생물, 공중보건, 환경위생	
토목직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토목시공학, 도시계획학 중 1 과목	물리, 측량, 응용역학	
건축직	물리학개론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중 1 과목	물리, 건축구조, 건축계획	
기계직	물리학개론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중 1 과목	물리, 기계설계, 기계공작일반	
전기직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전기기계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중 1 과목	물리, 전기통론, 전력	
지적직	물리학개론 지적학개론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중 1 과목	수학(1), 측량, 지적법규	
농업직	생물학개론 재배학원론	토양학, 수도작, 전작 중 1과목	생물, 작물(식용작물), 토양비료	

직급별 직렬별	6급에의 승진		7·8급에의 승진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임업직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임정학 삼림보호학 중 1 과목	생물, 조림	삼림보호, 수목, 조경 중 1과목
화공직	화학개론 단위조작 화학열역학		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축산직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가축육종학 중 1 과목	생물 가축사양 가금 및 가축	
수의직	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위생학	수의전염병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중 1과목	생물 수의위생 수의전염병	
약무직	약제학 약전학	공중보건학 약물학, 유기약품 제조화학, 무기 약품제조화학 중 1과목		
간호직	간호학개론 간호관리학	성인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모·아 간호학 중 1과목	간호학개론 지역사회간호학 모·아 간호학	

기타직은 「공무원임용시험령」 해당 직급의 특채 및 전직시험 제2차 과목에 따른다.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기준표(제37조 관련)

경 력 임용계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이 하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 재직한 기간

비고 :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2]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표(제37조 관련)

상당계급 구분	5급	6급· 기능6급 이상	7급· 기능7급	8급· 기능8급	9급· 기능9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공무원		기능6급 이상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이하
외무공무원	직무등급 5등급	직무등급 4등급	직무등급 3등급	직무등급 2등급	직무등급 1등급
경찰공무원	경정	경감·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령 지방소방령	소방경위 소방경 지방소방경위 지방소방경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군인	대위	중위	소준위 위위사	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정보원 직원	5급	6급 기능6급 이상	7급 기능7급	8급 기능8급	9급 기능9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고용직공무원					고용직
계약직공무원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9조 관련)

### 1.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

#### 가.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 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상,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공업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업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구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구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업 (섬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업 (화학) (가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학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업 (자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업 (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업 (축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역	수역사		
해양수산 (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향로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향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해 양 수 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 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 설 (토목, 수도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 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 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통 신 (통 신 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통 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통 신 (전자통신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비고 : 간호직렬의 가점 대상 자격증의 구분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아래 표와 같다.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간 호		전문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 2급

## 나.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p>
농업연구	<p>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p> <p>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p>
농업연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산)	<p>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p> <p>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p> <p>수의사</p>
농업연구 (농공)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p>
녹지연구	<p>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p> <p>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p>
해양 수산연구	<p>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p>
보건연구	<p>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p> <p>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p> <p>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p>
환경연구	<p>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p> <p>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p> <p>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p>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다.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생활지도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특별임용 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라. 기능직

직렬 \ 구분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토 목	<p>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건축	<p>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p> <p>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건축사</p>	<p>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통신	<p>기술사(정보통신)</p> <p>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p> <p>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p>	<p>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p>
전기	<p>기술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p> <p>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lt;전기분야&gt;, 품질관리, 승강기)</p> <p>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p>	<p>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lt;전기분야&gt;, 품질관리, 승강기)</p>
기계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lt;기계분야&gt;, 품질관리)</p> <p>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p>	<p>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lt;기계분야&gt;, 품질관리, 영사)</p>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 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 스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 고분자제품제조)
선 박, 선 박 기 관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 립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위 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특별임용 시에 위의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 2.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점

구 분	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별표 14]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제39조 관련)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0.25점	0.15점	0.05점
영 어	TOEFL	CBT	197점이상	183점이상 197점미만	163점이상 183점미만
		IBT	71점이상	65점이상 71점미만	57점이상 65점미만
	TOEIC		700점이상	640점이상 700점미만	595점이상 640점미만
	TEPS		625점이상	512점이상 625점미만	472점이상 512점미만
	TOSEL (ADVANCED)		565점이상	483점이상 565점미만	373점이상 483점미만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	55점이상 60점미만	51점이상 55점미만
기 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	55점이상 60점미만	51점이상 55점미만

비고 : 위 표의 0.15점 및 0.05점의 가점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획득한 성적에 한해서만 2010년 1월 1일부터 평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등록 번호		<b>임용후보자등록원서</b>				수험 번호	
1. 성명  한글 (한자)	2. 생년월일 19 . . .(만 세)	4. 성별  남 여	5. 시험합격종별  년도 제 회 급 직임용시험 (등급)	6. 희망 지구  제1희망--  제2희망--	※등록심사		
	3. 주민등록번호				사진 대조	서류 심사	
7. 현주소	① 번지 호( 통 반) (전화 번)				(사진첨부) ※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 원판		
8. 병역	필	ㄱ. 역종    ㄴ. 군별    ㄷ. 병과    ㄹ. 계급 ㅁ. 군번    ㅂ. 입대년월일    ㅅ. 제대년월일					
9.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부문, 과목	
10. 자격, 면허				11. 상벌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별		
12. 특 기		13. 운 동		14. 취 미		15. 종 교	
16.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응 시 원 서 부 본 침 부 란

17. 재산사항	㉠부동산	(가옥 평)	(임야 평)	(전답 평)	②동 산( 원)
----------	------	--------	--------	--------	----------

18.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현 업	현 주 소

19. 가족사항

본인과의관계	성 명	성 별	직 업	생년월일	최 종 학 력	비 고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20    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	20. 우 무 인	
<p><b>중량구청장</b> 귀하</p>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비 서 류	1. 가족관계등록부 2통 2.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사본 1통 3.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 시)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2. 병적증명서 1통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임용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등록하십시오.

###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부터	

### 2. 등록장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 3. 구비서류

####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하십시오,
- 2)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2통
- 3)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5)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 시) 1통
- 6)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7)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 발행관계 증명서 1통
- 8)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 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9)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
- 10)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붙임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붙임)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 기재, 한글만으로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연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기재할 것이며 ※표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1.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2. 생년월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3.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4. 성 별 : 남 · 녀 해당 □에 ✓표를 한다.

6. 희망지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7. 현 주 소 : 우편물이 송달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8. 병 역 : 미필자는 미필란에 제1국민역, 보충역, 징집연기중, 징집면제, 병역사유를 기재한다.

9. 학 력 :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한다.

10. 자격, 면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한다.

11.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한다.

16.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일반사회경력을 기재한다.

17. 재산사항 : 부동산은 가옥 · 임야 · 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평수로 - 동산은 금액으로 기재한다.

19. 가족사항 : 가족명을 한문으로 직계가족만 쓰고, 직업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0. 우 무 인 :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날인해야 합니다.

## 6.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 잉크를 사용하되 한글로 자필하십시오.

나. 본적을 전직한 사람은 반드시 원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통·반까지 명기해야 합니다.

라. 남자 기혼자는 처가를, 여자 기혼자는 친가를 가족사항 처가란에, 미혼자는 실가만 기재합니다.

마. 보증인은 직계가족이 아닌자로서 임용후보자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주변의 덕망을 갖춘 인사로 기재해야 합니다.

바. 8.15이후 거주지 기재는 임용후보자 본인의 출생후 거주지 ○전사항을 기재하되, 가장 오래 거주한 주소지 4개소를 기재합니다.

사. 해당없는 란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합니다.

자. 신원진술서 각장마다 상단여백에 증명사진을 1매씩 부착하십시오.

(4매중 2매는 좌측 상단에, 2매는 우측상단에 부착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20 . .

수 신

참 조

제 목 :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 통보

(문서분류기호)로 배정된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직 렬	계 급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비 고

- 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

(발신기관명)

직 인



1. 임용자 명단

시험회수 및 구분	등록번호	성 명	임용일자	임용직급	발령부서 (직 위)	비 고

2. 임용불응자 명단

①시험회수 및 구분	②임용예정 직 급	③등록번호	④성 명	⑤임용불응 사 유

- 비고 :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

## 실 무 수 습 계 획 서

성명		성별	남 · 여	생년 월일	년	월	일	주소	
시험 구분	( )직 제 회 급 공무원 시험			합격 일자				유효 기간	년 월 일
학력				경력					
임용 상황	임용일자	임용부서	시보기간	시보단축기간	시보단축 사유		보직부여		
	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	월			일자 : 년 월 일  직위 :		
수습 계획 및 수습 실적	배치 부서								
	수습 계획 기간	· · · ~ · · · ( 일간)							
	실지 수습 기간	· · · ~ · · · ( 일간)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 공무원 승급발령(보고)

1.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호봉승급 발령함.(보고합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	발령호봉	발 령 전		호봉사정 경력기간	비 고
				호 봉	승급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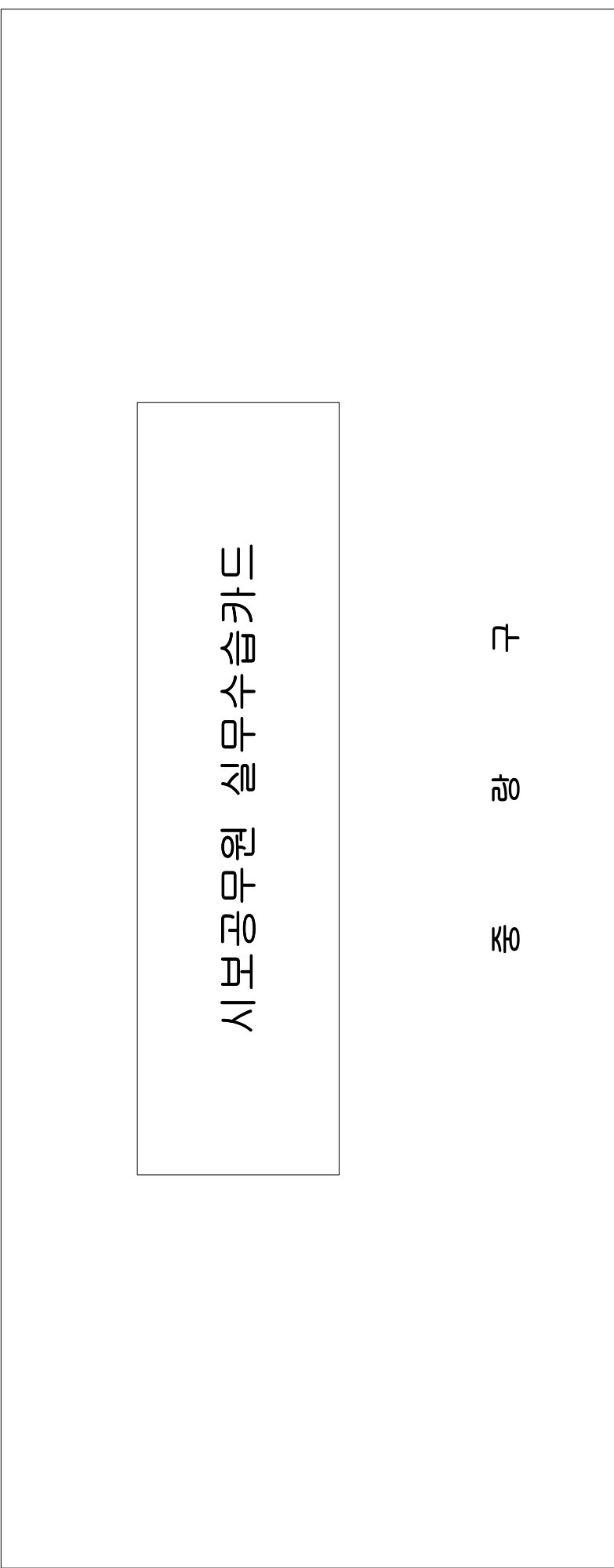
발령일자 20 년 월 일자

중랑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외면)



제 호 량 구

297mm×210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내면)

한글 :																								
① 성명	한문 :	② 성별	③ 주소		년도					회	직	급												
④ 생년월일	간	남·여	⑤ 시험합격년도							⑦ 학	위	⑧ 사	진											
⑥ 학력	부터	까지																						
⑥ 학력	부터	까지																						
수습사항	수습성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호		호		가 : 불량		량													
			양 : 보통																					
⑨ 수습기관명	⑩ 수습기관	⑪ 수습내용	구분	평가기준	⑭ 근무상황 총실성 (14) 수습에 충실하며 결근,지참조퇴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	⑮ 책임성 적극성 (12) 업무수행에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관심도는 어떠한가?	⑯ 이해판단력과 대인관계 (10)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 대인 관계는 어떠한가?	⑰ 지식 및 기술 (8)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⑱ 수습실적 (3) 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였는가?	⑲ 적성판단 (3) 공무원으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 로서 자질은 어떠한가?	⑳ 평정 및 확인자 총점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14	11.2	8.4	5.6	12	9.6	7.2	4.8	10	8	6	4	8	6.4	4.8	3.2	3	2.4	1.8	1.2
			⑫ 평정자 직성명㉑																					
			⑬ 확인자 직성명㉒																					



(외면)

신 분 변 동 상 황			기 타 사 항
기 간	변 동 내 용	변 동 사 유	
<p>※작성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습성적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li><li>· 수습기관명은 수습기관(담당관, 과, 동 단위 보조기관)별로 기재할 것</li><li>· 수습내용은 개조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할 것</li><li>· 수습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본 카드로 별도관리</li></ul>			<p>종합의견</p> <p>(수습기관장)</p> <p>(서명 또는 인)</p>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09.03.31)된 내용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 1) 안 제1조(목적)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로 개정
- 2) 안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중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개정
- 3) 안 제7조(지급절차) 중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로 개정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정비

- 1) 항 번호 띄어쓰기
- 2) 인용법령에 낫표(「 」)표기(안 제1조, 제6조, 제8조제2항)



##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등지급에  
관한규칙”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  
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 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근속연수의 계산)</b>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 한다.</p> <p><b>제3조(지급계획의 수립)</b>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p> <p><b>제1조(목적)</b>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 관한 ----- -----</p> <p><b>제2조(근속연수의 계산)</b> -----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p> <p><b>제3조(지급계획의 수립)</b>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및 -----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p> <p>② 제1항의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 퇴직예정일등 ----- 사항을 포함하여야 -----</p>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지급신청)</b>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4조(지급신청)</b> 제3조에 _____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 신청기간 내에 -----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 식의 자진퇴직원을 _____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p>
<p><b>제5조(지급심사대상)</b>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자로 한다.</p> <p>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의일을 기준으로 한다.</p>	<p><b>제5조(지급심사대상)</b>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p> <p>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 --- <u>자의로</u> ----- ----- ----- 사망한 다음날을 -----</p>
<p><b>제6조(지급심사기준)</b>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li> <li>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li> <li>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li> </ol>	<p><b>제6조(지급심사기준)</b>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에 따른 ----- ----- <u>각호의</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직종 -----</li> <li>2. 「공무원연금법」상 -----</li> <li>3. -----</li> </ol>

현 행	개 정 안
<p><b>제7조(지급절차)</b> 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p> <p>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7조(지급절차)</b> ① 자진퇴직수당은 ----- ----- 한다. 다만 ----- 해당 공무원의 ----- 장이 ----- -----</p> <p>② 구청장은 -----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 ----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 ----- 해당 공무원의 ----- -----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p>
<p><b>제8조(수령권 승계)</b>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유족이 이를 승계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p>	<p><b>제8조(수령권 승계)</b> ① 자진퇴직수당은 ----- -----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 ----- 자진퇴직수당 ----- 그 유족이 ----- ② 유족의 ----- 우선순위, -----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p>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소 속		공무원의 구 분	<input type="checkbox"/> 고용직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직종 · 상당계급	(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근속기간	년 월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무상한 연 월 일	년 월 일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p>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첨부 : 자진퇴직원 1부.</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중랑구청장 귀하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확인 : 인사담당                   (인)</span></p>					

주) 자필로 기재하고 □는 √표를 하되, 굵은 선 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자진퇴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 량 구 청 장 귀하

※ 210mm×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및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의 개정('08.12.24)된 내용에 맞게 서식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시된 내용 중 규칙에 중복된 내용 삭제

-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계산을 위한 정년 잔여기간 산출방법
- 2) 대간첩작전 등 수행으로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한 가산지급

나. 개정된 내용에 맞게 서식 변경 및 일부 미비점 정리 등

- 1) 명예·조기퇴직신청서 및 명예·조기퇴직원 등
- 2)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정비
  - 항 번호 띄어쓰기
  - 인용법령에 낫표(「」)표기(안 제1조, 제3조,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4조)

##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초과된 정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과된 정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의 초과가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 직(계)급의 초과된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b>											
신청인 기재란	①소 속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③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						
	한 글			⑥주민등록번호							
	한 자			⑦ 주 소		□□□-□□□					
	⑤성명			⑧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⑬ 정 년		(세, 년)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고용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 (인)				
	⑮정년남은기간 (수량지급대상기간)		( 년 월 ) ( 년 월 )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input type="checkbox"/> 비위·형벌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 형량 : )					
		확인	인사담당	(인)	연금담당	(인)	감사담당	(인)			
<p>「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p>											
<p>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b>소속기관의 장</b>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인</span></p> <p>중량구청장 귀하</p>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  
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  
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  
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 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⑩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⑫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자가 기재)
7.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함 다만,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 서식)

##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량구청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09.7.1)되어 소매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영업소간 거리, 거리측정 방법 등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소매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안 제3조)

- 1)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함.
- 2) 신축 상가지역의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는 신축 건물 완공 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고, 보존등기 등 점유권이 확정된 후 공고

나. 소매인 지정기준(안 제4조)

-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
-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아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써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다.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안 제5조)

- 1)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업소 등에는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음.

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안 제6조)

-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함.
- 2)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 면적을 말하며,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과 제4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와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2. 신축 상가지역의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는 신축 건물 완공 후 건축물관리 대장에 등재되고, 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법 제16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한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써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 ③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장소 중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2.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
- ⑤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와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 공간을 포함한다)·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의 건물기둥·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